

# 改葬禮에 관한 小考

— 정만양 · 정규양 형제의 『改葬備要』를 중심으로 —

이 승 연\*

## 차례

- I. 서언
- II. 『개장비요』의 前身
- III. 『개장비요』의 특성과 의의
- IV. 결어

### 【국문초록】

이 글은 18세기에 저술된 정만양 · 정규양 형제의 『개장비요』를 통해 전통 개장례의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예학적 특성 및 예학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개장비요』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구준의 『가례의절』과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검토하였다. 특히 『가례의절』과 『상례비요』는 조선 주자학자들에게 있어서 『주자가례』 입문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개장비요』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구성과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정만양 · 정규양 형제의 대표적인 예서인 『의례통고』, 그리고 『훈지양선생문집』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당시 개장례와 관련된 학문적,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개장비요』의 또 하나의 특징은 풍수설 비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풍수설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독립된 절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조선 사대부들의 풍수관을 엿

\* 경산중학교 교사

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밖에 『개장비요』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던 유장원의 『상변통고』, 서인예학을 대표하는 박세채의 ‘개장의’ 등도 참고하여 ‘개장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망하여 보고자 하였다.

정만양·정규양형제는 영남남인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18세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소실되었지만 『가례차록』, 『가례차의』라고 하는 체계적인 가례주석서가 있었으며,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고증하여 향례를 새롭게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교화를 꿈꾸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 형제가 영남 예학, 더 나아가 조선 예학에 끼친 영향이나 위치에 관해서는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개장비요』에 대한 고찰은 그들의 예학사적 위치나 의의를 재조명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주제어

구준, 김장생, 정만양, 정규양, 『가례의절』, 『상례비요』, 예학, 개장비요, 개장례

## I. 서언

『개장비요』는 18세기 전후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勛叟 鄭萬陽(1664~1730)·簾叟 鄭葵陽(1667~1732) 형제의 저술로, 서명 그대로 改葬禮를 규정한 예서이다. 『주자가례』에조차 언급이 없는 이 의절을,<sup>1)</sup> 그것도 영남의 한 한미한 선비가 한 권의 예서로 편찬, 간행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정만양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개장비요』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1) 조선에 가장 널리 통용되었던 『성리대전』 본 『주자가례』에는 『주자어류』 권89, 예6, ‘관혼상’에 보이는 개장과 관련된 주자의 언설이 인용되어 있지만, 이 주자 언설도 「가례4」, 상례, ‘墓祭’조에 注의 형태로 소개되어 있으며, 그것도 개장절차 그 자체를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장 후에는 墓가 아니라 廟에 告해야 한다는 것, 즉 사당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적어도 주자에게는 개장례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동기는 조부와 부친 묘의 이장이었다. 주자 역시 『주자가례』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어머니의 상이었다. 그러나 주자가 『주자가례』를 士庶人을 위해 저술한 예서로 규정하였던 데 반해, 정만양은 『개장비요』를 一家의 예서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는 『개장비요』 ‘서’에서,

내가 사사로이 편히 참고하고자 한 것으로 감히 이것을 공변된 것으로 세상에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sup>2)</sup>

라고 하며, 『개장비요』의 공론화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정만양의 의도와는 달리 『개장비요』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폭넓게 읽혔던 것 같다.<sup>3)</sup> 무엇보다 벽파의 영수인 김종후(?~1780)의 『가례집고』에 『개장비요』가 인용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만양·정규양은 왜 자신들의 예서가 사대부들 사이에 확산되어 가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일까? 더구나

2) “蓋所以私自便攷, 非敢以是爲可公傳於世也”(『개장비요』 ‘서’)

3)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개장비요』가 대구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루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예학자의 예서로서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지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장비요』의 판본을 몇 가지 소개하여 두겠다. 형태사항은 도서관의 서지사항을 참고한 것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대학명	형태사항
경북대학교	1册 : 四周雙邊 半廓 22.1×15.0cm, 有界, 10行 20字, 上下內向二瓣花紋魚尾 ; 30.2×20.3cm
계명대학교	東裝1册 : 四周雙邊, 半郭 20.8×15.6cm, 有界, 10行 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 32.7×21.1cm 東裝1册 : 四周雙邊, 半郭 20.8×15.6cm, 有界, 10行 20字, 內向花紋魚尾. ; 29.8×21.2cm
영남대학교	1册(38張) : 四周雙邊, 半廓 21.1×16cm,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內向四瓣黑魚尾 ; 31.4×20cm
충남대학교	1册 : 四周雙邊, 半郭 22.2×16.0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0×20.8cm
국립중앙도서관	38장 : 四周雙邊, 半郭 21.9×15.7cm, 10행 20자. 註雙行, 內向葉花紋魚尾 ; 32.4×20.3cm 38장 : 四周雙邊, 半郭 21.4×15.8cm, 10행 19자. 註雙行, 內向葉花紋魚尾 ; 29.9×20.4cm

계명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두 종류의 『개장비요』를 소장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10행 19자와 10행 20자이다. 이로써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개장비요』가 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개장비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들이 예서를 저술하여 간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일종의 공론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개장례는 그들의 저적처럼, 古禮인 동시에 變禮이다.<sup>4)</sup> 이미 『좌전』에 그 이른 예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기』 「상복기」에 “改葬에는 시마복을 입는다”라고 한 구절 외에 다른 명문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개장례의 이러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변례는 그들이 장재의 말을 빌려 변명하고 있듯이, 학문이 완성되지 못한 자가 함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개장례에 관한 예서를 편찬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장이 번번하게 행하여졌던 조선의 경우, 스스로 개장례를 제정하여 개장이라는 의식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훈지양선생문집』에는 실제로 개장절차를 둘러싸고 교환된 편지글이 몇 통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대표적인 예서인 『의례통고』에도 개장례에 관한 사대부 사이의 논변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정만양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개장례는 당시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종의 과제였던 것이다.

한편, 정만양·정규양형제가 개장례의 저술을 주저하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었다. 이미 『주자가례』의 모범이 된 사마광의 『書儀』에서도 풍수설이 葬禮에 끼친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며, 『주자가례』의 시행을 돕기 위해 명대 丘濬이 저술한 『가례의절』에도 풍수설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개장비요』가 ‘擇地’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어도 풍수설에 따른 개장과 “孝子 慈孫의 不得已”<sup>5)</sup>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 풍수설에 대한 정만양·정규양의 입장을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자가 『주자가례』를 저술한 것이나, 정만양·정규양

4) 정만양의 ‘서’는 ‘改葬亦古也’로 시작되며, 정규양의 ‘跋’은 ‘改葬禮之變者也’로 시작된다.

5) 『개장비요』‘서’.

형제가 『개장비요』를 저술하게 된 데에는 모친상과 조·부의 이장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동인이 되었다. 학문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던 동아시아 지식인의 학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물론 18세기 이후 개장례의 준칙이 된 『개장비요』의 특성이나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글은 『개장비요』의 분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 정만양 정규양형제의 삶과 학문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에게는 이미 소실되었지만 『가례차록』, 『가례차의』라고 하는 체계적인 가례주석서가 있었으며,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고증하여 향례를 새롭게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사회를 재편하고자 하였다. 향음주례와 향사례, 그리고 학례를 별권에 수록하여 둔 『의례통고』는 실제로 영남예학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남 예학의 특징, 더 나아가 조선 예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6)</sup> 『개장비요』와 더불어 아직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영남의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예학, 더 나아가 조선 예학의 한 단면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다.

## II. 『개장비요』의 前身

‘범례’에 밝히고 있듯이, 『개장비요』의 전체적인 편차와 내용은 丘濬의 『가례의절』에 준하였으며, 의절에 사용되는 도구나 기물은 사계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따랐다. 따라서 『개장비요』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례의절』과 『상례비요』의 특성에 관해 약술하고자 한다.

6) 『의례통고』에 관해서는 이승연, 「18세기 전후 주자학의 지역적 전개에 관한 일 고찰—정만양 정규양 형제의 『의례통고』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 1) 구준의 『가례의절』

개장례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예서는 구준의 『가례의절』이다. 구준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대 최고의 현군으로 평가되는 효종의 비호 아래 홍치성세를 이룩한 인물이자, 명대를 풍미한 양명학에 대항하며 주자학의 부흥을 기도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인 『가례의절』은 조선 중기 주자학자 朴莢(1471~1540)의 지적처럼,<sup>7)</sup> ‘의절화’라는 일대 수정을 통해 『주자가례』가 보급·실시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예서이다. 조선이 이 『가례의절』을 통해 『주자가례』를 이해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경우는 『주자가례』와 혼용되어 통용되기도 하였다(이승연, 2003).

『가례의절』은 『주자가례』의 여러 판본 가운데 周復의 5권본을 저본으로 하였다.<sup>8)</sup> 『가례의절』이 주복 5권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그 하나, 조선 가례서가 저본으로 하였던 『성리대전』본이 ‘주자 만년의 정론’과 ‘고례의 부활’을 주장한 楊復 附注를 주로 하였던 데 비해, 주복은 양복의 지나친 고례 중시가 주자의 原義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이를 별권에 따로 수록하여 두었다. 구준이 명대 초기에 완성된 『성리대전』본 『주자가례』를 두고 송대의 주복본을 선택한 것은 주복의 양복 비판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時俗과 과감한 절충을 시도하며, 『주자가례』의 의절화를 통해 그 시행을 도운 『가례의절』의 특성파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둘, 이 주복의 5권본은 다른 한편으로 『주자가례』 판본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시속을

7) 박영은 “송대 주문공에 이르러 옛 것을 헤아려 제도로 정하여 가례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혹 행해지기도 하고 행해지지 않기도 하였는데 명대의 구준이 성화 연간에 문공가례를 취하여 그것을 간략히 하여 의절을 지음으로써 이후부터 중국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행하게 되었다”(『松堂集』 권1, 서, 答朴澤之)고 하였다.

8) 『주자가례』의 판본에 관해서는 아즈마 슈지의 『『家禮』の刊刻と版本—『性理大全』まで』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시하면서 주자의 원의에 충실한 예서를 제작하는 것, 그것이 구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니, 구준은 시속 중시를 주자의 원 뜻이라 보았던 것이다. 구준은 먼저 『주자가례』의 본문을 ‘의절화’하는 한편, ‘여주’와 ‘고증’을 신설하여 기존의 여러 주석들을 별도로 수록하고, ‘고증’을 통해 각 주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개장례는 『가례의절』의 권6, 喪虞, ‘禫祭’ 다음 조에 ‘補入’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데 “가례에 개장이 없으므로 지금 여러 예를 모아서 보입한다”고 개장조 머리에 밝히고 있다. 먼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가례의절』 ‘개장조’의 내용을 도표화하기로 한다.

本 文	儀 節	비 고
將改葬，先擇地可葬者，治棺，制服，具斂牀布紋衾衣，治葬具，擇日，開塋域祀土地，遂穿壙作灰隔，祠土地。	(儀節), (祝文)	皆如始葬之儀
前期一日告于祠堂	(儀節)	
執事者於墓所張白布幙爲男女位次		
厥明內外…餘皆素服就位哭盡哀		
祝祠土地	(儀節), (祝文)	
啓墓		
役者開墳，舉棺出置幕下席上，祝以功布拭棺履以衾		如大斂之儀
祝設奠于柩前	(儀節)	如常儀
役者昇新柩於幙門外，遂詣墓所，執事者設斂牀於新柩之西，執事者開棺…	(儀節)	
遷柩舉輿		
發引		如始葬發引之儀
未至執事者先設靈輿靈座爲男女	(儀節)	
主人男女各就位哭		
乃窆		
既葬就幕所靈座前行虞祭	(儀節), (祝文)	
祭畢徹靈座主人以下出就別所釋紼麻服素服而還		
告于祠堂		
改葬考證		喪服記(『예기』), 주자어류

〈표 1〉 『가례의절』 ‘개장조’의 구성

‘개장조’는 『가례의절』의 전체적인 편차에 따라 먼저 개장 절차를 한 조목씩 밝힌 다음, 이를 의절화하여 각각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마지막 ‘고종’에서 그 근거를 고증하고 있다. ‘고종’에서 구준이 제시한 근거는 『예기』 「상복기」의 ‘改葬總’와 주자가 개장에 관해 언급한 구절<sup>9)</sup>이다. 구준이 개장 절차로서 본문에 제시한 것은 ‘비고’에 밝혀둔 것처럼 『가례』의 장례 절차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를 개장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부언하여 둔다면, 양복 역시 개장절차는 始葬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또한 주자의 뜻이기도 하였다. 축문 등을 따로 명시하여 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례의절』의 특징은 조선 주자학자들이 저술한 개장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다음에는 조선 예학의 祖라 일컬어지는 김장생의 『상례비요』<sup>10)</sup>를 검토하기로 하자.

## 2) 김장생의 『상례비요』

『상례비요』는 時祭, 忌祭, 墓祭 등 제례와 상례만을 다룬 상제례서이다. 김장생의 또 한 권의 예서, 『가례집람』이 『주자가례』 주석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면, 『상례비요』는 철저하게 ‘행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주자가례』를 시행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가례의절』과 유사하다(이승연, 1999).

『상례비요』의 특징은 『가례의절』과 마찬가지로 『주자가례』를 의절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가례의절』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의절에

9) 참고로 부언하여 둔다면 주자가 개장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주자어류』 권89, 예6, ‘관혼상에 보이며 그 전문은 “須告廟而後告墓, 方啓墓以葬, 葬畢, 奠而歸, 又告廟, 哭, 而後畢事, 方穩. 行葬更不必出主, 祭告始却出主於寢”이다.

10) 원저자는 신의경이며 김장생은 이를 수정 가필하여 완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사용되는 도구나 기물을 먼저 소개하고, 그 기물을 중심으로 의절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절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먼저 의식에 사용되는 기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개장조’ 역시 개장에 필요한 도구나 기물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개장조는 『상례비요』 하권, ‘吉祭’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가례의절』이 ‘담제’ 다음에 ‘개장’을 두었던 데 반해, 『상례비요』가 ‘길제’ 다음에 ‘개장’을 넣은 것은 ‘길제’ 역시 『상례비요』가 『주자가례』를 보완하여 신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具	本 文	비 고
(改葬之具)	將改葬, 先擇地可葬者, 治棺, 具斂牀布紋衾衣, 治葬具, 制服	制服의 위치
(開塋域祀土地祝文)	擇日, 開塋域祀土地, 遂穿壙作灰隔,	皆如始葬之儀
(祠堂告辭)	前期一日告于祠堂, 執事者於墓所張白布幛, 爲男女位次, 厥明內外…餘皆素服, 就位哭盡哀	
(祠土地祝文)	祝祠土地	
(啓墓告辭)	乃窆一如始葬之儀啓墓, 役者開墳, 舉棺出置幕下席上, 祝以功布拭棺履以衾, 設奠于柩前, 役者昇新柩於幛門外, 遂詣墓所, 執事者設斂牀於新柩之西, 執事者開棺… 遷柩就舉, 發引如始葬之儀, 未至執事者先設靈輦靈座爲男女位次, 柩至主人男女各就位哭, 乃窆一如始葬之儀	柩→棺 舉→就
(祠土地祝文)	祠土地於墓左	
(虞祭祝文)	既葬就幕所靈座前行虞祭如初虞儀, 祭畢徹靈座而還	主人以下出就別所 釋纓麻服素服 생략
(祠堂告辭)	告于祠堂, 三月而除服	

<표 2> 『상례비요』 ‘개장조’의 구성

앞서 소개한 『가례의절』과 비교하여 보면, ‘제복’의 위치를 바꾼 것 등 몇 가지 절차와 글자의 이동이 있을 뿐, 『상례비요』는 『가례의절』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한 가지 특기하여 든다면, 김장생이 ‘개장조’ 첫머리에 “世惑於風水之說, 有無故而遷葬者, 甚非也”라고 하며 풍수설에 따라 개

장을 반복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풍수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개장과 풍수의 관계에 관해서는 장을 바꾸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 Ⅲ. 『개장비요』의 특성과 의의

『개장비요』는 정만양 38세 때 저술로, 遷柩 이상은 형 만양이, 천구 이하는 동생 규양이 각각 저술한 정씨 형제의 공저이다. 그의 『언행록』에

경산의절 및 사계비요는 먼례에 있어서 소략한 부분이 많았다. 예전에 계이년에 개장을 하면서 별도로 한 책을 두어 제례, 복제 그리고 의물의 다과를 정하여 이를 개장비요라 하였다<sup>11)</sup>.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가례의절』을 답습하고 있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에 맞추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점에 『개장비요』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장비요』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상의 특징을 검토한 후,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풍수설에 관한 양수의 견해를 보기로 한다.

#### 1) 『개장비요』의 특성

먼저 구성상의 특징을 보기로 하겠다.

전 장과 마찬가지로 『개장비요』의 전체적인 내용을 도표화하여 구성상의 특징을 보도록 한다.

11) 『훈지양선생문집』 ‘부록’, ‘언행록’, “瓊山儀節及沙溪備要於緬禮疏略，嘗於癸巳改葬時，別置一冊，詳載祭禮服制及儀物容入寡多，謂之改葬備要。”

(1) 구성상의 특성

改葬備要序	乙未三月上浣橫溪病墳書	
改葬備要跋	嘉月上浣橫溪病廬書	
범례		
將改葬		
先擇地可葬者		風水說
治棺	(治棺之具)	
具斂牀布絞衾衣	(改斂之具)	如大斂儀
治葬	(治葬之具)	
制服	(成服之具)	
擇日		
開塋域祀土地	(開塋域祀土地之具), (祝文式) (家禮始葬儀)	如始葬儀
遂穿壙作灰隔	(穿壙之具), (家禮始葬儀)	如始葬儀
前期一日告于祠堂	(出主告辭)	
執事者於墓所張白布幕爲男女位次		
素服就位哭盡哀		
祝祠土地	(祠土地之具), (祝文式), (丘儀本注)	
啓墓	(啓墓之具), (啓墓告辭), (丘儀本注)	
役者開壙	(丘儀本注)	
舉棺出置幕下席上	(丘儀本注)	
(補)設靈座	(靈座之具)	
(補)立銘旌	(銘旌之具), (家禮初終條)	
設奠于柩前	(丘儀本注), (家禮大斂條)	
遷柩就輿	(丘儀本注)	
發引如始葬之儀	(家禮始葬儀)	
未至執事者先設靈輟靈座爲男女	(家禮始葬儀), (未至執事者先設靈輟註) (親賓次註)...	
乃窆一如始葬之儀	(家禮始葬儀), (祠土地之具), (祝文式), (丘儀本注)	
既葬就幕所靈座前行虞祭如初虞儀	(虞祭之具), (祝文式), (丘儀本注) (家禮初虞儀)	
告于祠堂	(祠堂告辭), (丘儀本注)	
三月而除服		

〈표 3〉 『개장비요』의 구성

〈표 3〉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개장비요』의 전체적인 구성은 첫째, ‘制服條’가 ‘치관’ 다음에서 ‘치장’ 다음으로 이동하고, ‘설영좌’와 ‘입명성’이 새

로 보입된 것을 제외하면, 『가례의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개장비요』는 개장례에 사용되는 기물이나 축문 등은 『상례비요』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상례비요』가 기물을 첫 머리에 두어 ‘시행’을 돕고자 하였던 것에 반해, 『개장비요』는 『가례의절』에 따라 ‘의절’을 먼저 제시하고 기물은 그 다음에 두었으며, 마지막에 구준의 주석을 덧붙였다. 셋째, 『가례의절』은 『주자가례』의 ‘始葬儀’를 근간으로 하여 개장례를 재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가례의절』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如始葬儀’라고 하였던 부분을 『개장비요』에서는 의절 형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례의절』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제자 鄭重器(1685~1757)의 지적처럼, 실제로 개장은 시장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그는 양수가 『개장비요』를 저술하게 된 동기를

구준의 『가례의절』은 간략하여 매조마다 “如始葬儀”라고 하였으나 告廟啓墓改  
斂設饋奠 등은 시장과 크게 다른데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다<sup>12)</sup>

라고 하였다. 참고로 부언한다면 정중기는 초본 형태로 보존되던 『개장비요』를 수정, 보완한 인물이며,<sup>13)</sup> 그의 예서인 『가례집요』는 양수의 예설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이후 영남 예학의 모범이 되었다<sup>14)</sup>.

18세기에 등장한 대부분의 예서는 개장례를 다루고 있다. 남계 박세채가 『삼례의』 3권에 별도로 ‘改葬儀’를 수록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영남 예학을 대표하는 유장원의 『상변통고』 등, 거의 대부분의 예서가 개장례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만, 거의가 체계적인 개장례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수가 『개장

12) 『매산선생문집』 권6, 발, 題改葬備要後

13) 『매산문집』 권51, 행장, 通政大夫刑曹參議梅山鄭公

14) 그 단적인 예로 19세기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사미헌 정복추의 『가례보의』는 정중기의 『가례집요』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비요』를 저술하게 된 동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 다음에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특징을 보기로 한다.

(2) 내용상의 특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학서는 『의례통고』이다. 『의례통고』는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조목을 『주자가례』의 내용에 따라 편집 정리한 것이다. 개장례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가는 『의례통고』 권11, '상례7'에 개장을 둘러싼 논변들을 따로 수록하여 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조	항
將改葬	
制服	改葬總·諸孫姪服色
開塋域祀土地	祠土地祝文式·合葬同塋
前期一日告于祠堂	重服中改葬告祠堂時服色
主人服總	重喪中改葬總當服不當服之疑
祝祠土地	祝祠土地文式
啓墓	並啓墓父母墓則亦當先輕後重·遷舊合新在同日則有守喪次臨啓墓之礙
舉棺出置幕下席上	改棺節次
設奠于柩前	
發引如始葬之儀	若自先塋下遷向他所則當有朝辭祖墓之儀
祠土地於墓左	祠土地祝文式
既葬就幕所靈座前行虞祭	虞祭祝式·新舊喪同日合葬則兩虞並設之非·新葬附舊墓則封畢後祭告議
告于祠堂	告辭式·虞後服素·在官遷葬者容可以病辭官
三月而除服	服總除服之節諸說不同

〈표 4〉 『의례통고』 '개장' 관련 조목

우선 개장례와 관련된 전체적인 구성이 『개장비요』와 일치함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개장례와 관련된 절차 하나 하나가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복제 하나만을 예로 들더라도 『예기』 「상복소기」에 보이는 ‘개장시’라는 一節 외에는 개장과 관련된 복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경우, 먼저 일반적인 시마복과 구분되는 개장례의 시마복을 새롭게 제작하여야 하며, 親疎에 따른 다양한 관계의 복제 또한 모두 새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상복소기」에는 ‘신하가 임금을 위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처가 남편을 위해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지만, 출가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시마복을 입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합장을 위한 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조선의 경우, 합장과 관련된 복제도 문제가 되었다. 일테면 어머니의 묘에 아버지를 합장하고자 할 경우의 복제와 같은. 참고로 부언하여 둔다면, 『훈지양선생문집』에는 진사 曹夏璋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아버지를 어머니의 묘에 개장하고자 할 경우의 복제를 물은 편지글이 실려 있으며<sup>15)</sup> 그 밖에도 할머니의 묘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개묘 후 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sup>16)</sup> 등 개장과 관련된 문답 서신이 수록되어 있다.

『의례통고』는 개장과 관련된 다양한 논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개장은 별도로 개장비요에 실어두었으므로 함께 참고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장비요』가 당시에 개장례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쟁의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개장비요』가 조선 개장례의 전형이 되어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개장비요』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존 예설의 종합과 정리, 이것은 『개장비요』의 특성일 뿐 아니라,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예학적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장비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와 ‘택일’, 특히 ‘택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풍수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

15) 권10, 書, 答曹進士.

16) 권10, 書, 答權整甫別紙.

이다. 이는 역으로 조선에 있어서 풍수사상의 영향과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장례와 더불어 그의 풍수설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절을 비꾸어 논의하겠지만 그의 풍수설에 대한 견해는 풍수설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풍수설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라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풍수설을 ‘술수’로 폄훼하며 학문의 장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는 조선 사대부들의 풍수관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의례통고』가 기존의 여러 예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개장비요』는 구준의 설을 근간으로 하여 구체적인 의절이나 기물을 제시할 뿐, 조선의 여러 예학자의 예설을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개장비요』를 통해 그가 수행하고자 한 것은 다양한 예설의 고증이 아니라 정리며, 그 정리를 통해 개장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시행을 돕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가례의절』이나 『상례비요』가 『주자가례』의 학문적 탐구보다 그 ‘행용’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과도 상통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다음에 박세채의 ‘개장의’를 소개하여 두겠다. ‘개장의’가 개장절차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장비요』를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	항 목	
治葬	爲改葬，先擇地可葬者，治棺具斂床布紋衾衣，治葬具，制服，擇日，開塋域祀后土，遂穿壙作灰隔	制服은 이동
告廟	前期一日告于祠堂，執事者於墓所張白布幙爲男女位次	厥明內外…餘皆素服，就位哭盡哀생략
祀后土	祀祀后土	
啓墓	執事者帥役者開墳，舉棺出置幕下席上南首，祝以功布拭棺履以衾	南首 補入
奠	祝設奠于柩前兼設上食，	奠 보입
改斂	役者新棺於…舊棺之西，執事者開棺…	

조	항 목	
奠	祝設奠	
遷柩	遷柩就輿	
發引	柩行, 主人以下哭步從, 途中遇哀則哭	途中遇哀則哭 보입
及墓	未至執事者先設靈輿, 柩至	
乃窆	主人贈	
成墳	加灰隔外蓋實以灰, 乃實土而漸築之	
祀后土	祀后土墓左	
男女各就位哭		
虞祭	既葬就幕所靈座前行虞祭執事者陳器具饌, 主人以下入哭, 降神, 祝進饌, 初獻, 亞獻, 終獻, 侑食, 主人以下皆出闔門, 祝啓門主人以下入辭神	
告廟	詣社堂奉出主就正寢行哭奠禮, 三月除服	

〈표 5〉 박세채의 '개장의'

박세채의 '개장의' 역시 일견 『가례의절』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개장의'는 『가례의절』을 답습했다기보다 시장의 를 근간으로 하여, 이를 재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세채가 『상례비요』에 따르지 않은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가례의절』에서 『상례비요』로 이어지는 개장례의 계보를 서인 계열의 예학자가 아니라 영남의 예학자가 계승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장의'의 경우도 특히 보완한 부분은 '如始葬之儀', '如大斂之儀'처럼, 시장의에 준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이로써 개장례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다음에는 그들의 풍수관을 중심으로 『개장비요』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개장례와 풍수

앞서 언급했듯이, 개장례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금기시 한 것은 풍수설의

혼입이었다. 물론 이것은 정만양 정규양 고유의 생각은 아니었고 『서의』이래 장례를 논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강조하였던 것이지만, 조선은 풍수설이 특히 성행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풍수관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개정비요』에 보이는 풍수설 비판의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수의 풍수관을 검토하기로 한다.

(1) 『개정비요』에 인용된 풍수설

먼저 『개정비요』가 인용한 풍수설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다. 단, 출처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의 근간이 된 『서의』, 그리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가례의절』에 한정하도록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이 개정례와 풍수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비요	書儀	朱子家禮	家禮儀節	기 타
司馬溫公葬說曰, 古者占宅占日...	0	0	0	家範
伊川先生葬說曰, 占其宅兆...		0	0	
程氏外書, 先生兄弟所葬以昭穆定穴...				
張子曰, 葬法有風水山岡, 此全無義理...				
玉峯寶傳, 龍勢雄猛...				禮儀補遺
朱子山陵疏曰...朱子曰, 葬之爲言藏也, 所以藏其祖考之遺體也...			0	
又曰, 程先生亦揀草木茂盛處				
臨川吳氏曰, 葬師之說, 盛於東南, 郭氏葬經者...			0	
瓊山丘氏曰, 風水之說, 其希覬求富貴之說...			0	

〈표 6〉 『개정비요』에 인용된 풍수설의 출처

송대는 경전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기존의 유학을 쇄신한 이른바 신유학이 등장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술수학이 크게 성행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풍수설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여 남송대에는 동진시대의 도사·郭璞의 이름에 가탁한 『葬經』과 주자의 畏友인 蔡元定の 이름에 가탁한 『發

微論』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다.<sup>17)</sup> 吉地를 찾아 매장을 미루다가 시신을 분실하거나, 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모두 이 풍수설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장비요』에 등장하는 언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은 한결같이 풍수설을 비판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풍수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명대의 대표적인 풍수서 『地理人子須知』의 저자·徐善繼 徐善述 형제가 한때 양명좌파의 거두 王龍溪에게 사사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당시 사대부들과 풍수설의 관계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만양·정규양 형제가 이 풍수서들을 직접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특히 채원정의 이름에 가탁한 『발미론』은 조선 사대부들이 금과 옥조로 여겼다고 일컬어지는 만큼 적어도 그 이름 정도는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옥봉보전’ 등을 제외하면 『개장비요』에 인용되어 있는 서적은 거의가 『가례의절』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가례의절』이 『주자가례』와 『주자가례』의 모범이 된 『서의』의 설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개장비요』가 북송대에서 명대에 걸친 사대부들의 풍수관을 종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절을 바꾸어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례의절』에는 보이지 않는 ‘옥봉보전’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여 두기로 하겠다.

‘옥봉보전’의 출처는 밝히지 못하였지만 “龍勢雄猛, 石骨多空…” 등의 구절로부터 풍수와 관련된 서적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옥봉보전’이 『개장비요』보다 약 100년이 앞선 『禮儀補遺』에 인용되어 있고, 또 『개장비요』보다 약 100년 후인 『喪葬儀節』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장의절』의 ‘택지조’가 『예의보유』와 거의 일치하

17) 『장경』과 『발미론』은 각각 광막과 채원정의 저술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자 모두 그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장경』과 『발미론』은 모두 남송기의 저술 밝혀졌다. 宮崎順子, 「傳郭璞『葬經』の成立と變容」 참고

는 것으로 보아 『상장의절』은 『예의보유』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상장의절』의 ‘옥봉보전’은 『예의보유』로부터 인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의보유』의 저자, 鄭鐘(1634~1717)이 안동 출신이고 『상장의절』의 저자인 李頤順(1754~1832)이 퇴계 이황의 9대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 사이의 전승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개장비묘』에 ‘옥봉보전’이 인용되어 있는 이유 또한 추측할 수 있다. 정만양·정규양은 『가례의절』을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당시 영남 남인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예서를 참고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예학이 18세기 영남 예학의 종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을 바꾸어, 다음에는 그들의 풍수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풍수에 관한 합리적 해석

『개장비묘』의 인용문에 한정한다면, ‘택지’와 관련하여 풍수설을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광이다. 그는 풍수설에 현혹되어 장례를 연기하거나 개장을 반복하는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풍수설이 미신에 불과함을 입증한 자신의 경험담<sup>18)</sup>을 소개하고 있다. 단, 여기서는 사마광의 인용 글이 지나치게 장문이므로 임천 오씨의 풍수설 비판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길지를 원하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10년이 지나도록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형제 몇 명이 각자 풍수설에 미혹되어 골육이 원수가 되는 자도 있었는데 모두 꺾박의 서적이 한 것이다.<sup>19)</sup>

18) 조부를 장례 지낼 때, 집안 어른들이 반드시 풍수가의 말에 따라 장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마광은 풍수가와 짜고 자신이 정한 땅을 풍수가가 정해 준 땅이라고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 결과 자신의 집안에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풍수관을 엿보게 하는 일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풍수설의 영향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풍수설에 현혹되어 부모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풍수설 비판의 요지는 그들이 '吉地'를 추구하는 이유에 있다. 사마광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은 자손의 貴賤, 貧富, 壽夭, 賢愚가 모두 그 땅의 형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화복을 위해 길지를 추구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비판처럼, 그러한 주장자체가 미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보다 그 부모의 시신을 방치하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불효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인 것이다.

그런데 길지를 찾아 부모의 시신을 방치하는 것이 불효라고 한다면 부모의 시신을 아무 곳이나 매장하는 것 또한 불효이다. 상례에 '擇地'가 하나의 의절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택지'의 기준으로서 흔히 거론되었던 것은 이천의 설이었다. 이천은 묘 터로 삼아서는 안 될 땅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는데, 나중에 도로, 성곽, 도랑이나 못, 경작지, 또는 권세자에게 빼앗기게 될 땅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개장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정만양 정규양 형제가 개장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조부와 부친의 묘에서 물이 솟아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 땅이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땅인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거기에 택지와 관련된 그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천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택조를 점친다는 것은 그 땅의 미악을 점치는 것이다. 음양가가 말하는 화복이 아니다. 땅이 좋으면 신령이 편안하여 자손이 번성하니 마치 그 뿌리를 튼튼히 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리가 원래 그런 것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손과 기가 같으니 저쪽이 편안하면 이쪽도 편안하고 저쪽이 위태로우면 이쪽도 위태롭다. 역시 (그것이) 이치이다.<sup>20)</sup>

19) “有貪求吉地未能協意，至十年不能葬其親者，…有兄弟數房惑於各房風水之說，至於骨肉化爲仇讎者，凡皆璞之書所爲也”(『개장비요』 ‘택지’조)

20) “卜其宅兆，卜其地之美惡也，非陰陽家所謂禍福也，地之美者，則其神靈安，其子孫盛，若培壅其根

라고 하였다. 이른바 ‘본근지엽론’이다. 조상을 좋은 땅에 묻으면 신령이 편안하여 자손이 번성한다. 조상과 자손을 같은 기라고 믿었던 그들은 그러한 기론에 입각하여 ‘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천의 이 ‘본근지엽론’과 풍수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음양가들이 말하는 화복과 이천이 말하는 ‘자손의 번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풍수설은 일반적으로 방위를 중시하는 理氣派와 대지의 형세를 관찰하는 形派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형파는 토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의 질을 그 토지의 형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기가 모이는 곳을 길지라고 하였다. 앞서 임천 오씨의 인용문에 잠시 언급되었던 『장서』는 이 형파의 대표적인 서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 지식인들에 의해 氣가 새롭게 사상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였던 송대, 형파의 풍수사상이 그 기론의 세례를 받아 새롭게 부상하였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서』가 “자손은 부모로부터 신체를 물려받았으므로 조상의 유해와 生者は 서로 감응한다”고 한 배경에는 이 유가적 기론의 영향이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장서』의 출현시기는 대체로 주자의 생존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자 역시 ‘산릉소’에서 풍수설에 따라 황제의 능묘를 선택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도 “主勢의 강약, 風氣의 취산 등은 논의해야 하며 시간을 들여 양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풍수설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자의 외우 채원정은 풍수에 밝았던 인물로 주자는 이 채원정으로부터 풍수설을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훗날 주자학자들 사이에서 풍수설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宮崎順子, 2007). 구준이 『가례의절』에서,

풍수설은 부귀를 회구하는 설이다. 비록 믿을 수는 없지만 생기를 타고 조고의 유체를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천의 본근지엽론과 부합한다.<sup>21)</sup>

而枝葉茂, 理固然矣. …父祖子孫同氣, 彼安則此安, 彼危則此危, 亦其理也”(『개장비요』 ‘택지’ 조).

라고 하며, 풍수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마광을 비롯하여 많은 유학자들이 풍수설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남기고 있지만, 송대 이후 유가적 기론과 결합된 풍수설은 확산일로를 걸었고, 마침내 채원정의 이름을 빌린 『발미론』이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풍수서에 주자注가 위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가의 합리적 해석이라는 세례를 받은 풍수설이 유가의 이름을 빌어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화복을 추구하는 풍수설을 미신적 풍수설로 지탄하면서 자신들의 기론에 입각한 풍수설을 그들의 전통적인 ‘효’의 논리로 합리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정규양이 ‘발문’에 남긴 다음 구절은 조선 사대부들의 풍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섯 가지 근심스러운 것은 도로가 되지 않는 것, 성곽이 되지 않는 것, 도랑이나 못이 되지 않는 것, 권세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경작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 그러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몸을 묻은 곳은 만세에 걸친 집이니 다섯 가지 근심 외에도 택조가 좋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산이 무너지고 물이 솟아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주자 역시 (아버지) 위재공의 묘를 세 번이나 옮겼다. 아마도 지도가 깨끗하지 않으면 체백이 평안하지 않고 체백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시 길지를 점쳐서 장례를 지내는 것도 역시 실로 정세의 어쩔 수 없는 것이다.<sup>22)</sup>

정규양은 주자의 개장을 선례로 들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하였고, 또 유가적 풍수관에 입각하여 ‘길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1) “瓊山丘氏曰，風水之說，其希覲求富貴之說，雖不可信，若乘生氣以安祖考之遺體，蓋有合於伊川本根枝葉之論。”(『개장비요』 ‘택지’조)

22) “五患者不爲道路，不爲城郭，不爲溝池，不爲貴勢所奪，不爲耕作所及 … 然父祖巾烏之藏，乃萬世悠久之宅，而五患之外，又或宅兆不利，則其爲揚於心，無異山毀而水湧，故朱夫子亦嘗三遷韋齋公之墓，蓋地道不淨，則體魄不寧，體魄不寧，則更卜吉地而葬之者，實亦情勢之不容已者也”(『개장비요』 ‘발’)

참고로 부언하여 두자면 정만양 정규양이 『개장비요』 ‘택지’조에 인용한 서물과 인물은 『의례통고』 ‘택지’조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천의 ‘본근지엽론’이나 주자의 ‘산릉소’ 등은 조선 주자학자들이 풍수를 논할 때 예외 없이 인용하였던 것으로, 민간의 풍수설을 미신으로 치부하면서도 자신의 풍수관을 정립하였던 당시 유가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개장비요』는 산발적으로 인용되던 송대 유가들의 풍수관을 종합하여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그것이 또한 『개장비요』가 지닌 예서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어

『개장비요』는 18세기 전후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저술로서, 개장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방법을 명시한 예서이다. 개장례라고 하는 간단한 의례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주자가례』에 개장례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실생활에서는 개장이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장비요』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개장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장비요』는 전체적인 체계는 『가례의절』에 준하면서, 의례에 사용되는 기물은 『상례비요』의 것을 수용하였다. 『가례의절』은 이미 그 수용기부터 이론적 모순이 지적되었으나 실제로 조선 사대부들이 『주자가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예서이다. 『개장비요』가 『가례의절』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은 주자 예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추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인 예학자 박세채의 ‘개장의’가 『주

자가례』의 ‘시장의’를 재구성하였던 데 반해 『개장비요』가 마찬가지로 『가례의절』을 근간으로 한 『상례비요』를 따랐다는 것은 영남 예학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개장비요』만이 아니라 그의 학문 전반에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하다. 18세기 이후 정쟁에서 패배하여 정권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영남의 한 선비가 학과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학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은 이후 영남 예학의 전개를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개장비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사대부들의 풍수관이였다. 송대 유학자들은 화복을 추구하는 음양가의 풍수설을 비판하면서도 유가적 기론에 입각하여 풍수설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개장비요』는 풍수설을 둘러싸고 전개된 송대 유가들의 풍수관을 수록하여 둠으로써 개장에 있어서 ‘택지’의 방법을 모순 없이 제시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조선 사대부의 풍수관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단, 오늘날 위서로 판정된 『장서』를 그들은 광박의 저술로 믿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아마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개장비요』는 개장례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예서이자, 18세기 영남 남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예서이다. 우리는 이 『개장비요』를 통해 전통 의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예학의 전개 내지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영남의 한 한미한 선비가 스스로 개장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방법을 규정하고자 하였다는 것, 그것은 주자학이 조선 전역으로 확대 보급되는 것과 궤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개장례라고 하는, 『주자가례』에 언급조차 없는 의례에 이 글이 주목한 것은 그 때문이다. 아울러 18세기 다수의 가례서가 출현한 영천 지역의 예학자,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예학적 특성과 의의를 재조명하는 것 또한 이 글의 목적이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예기』.
- 『주자가례』.
- 『가례의절』.
- 『상례비요』.
- 『송당집』.
- 『삼례의』.
- 『개장비요』.
- 『의례통고』.
- 『매산집』.
- 『대산집』.

2. 저서 및 논문

- 뎡중이, 『家禮』의 刊刻と版本—『性理大全』, 文學論集 48卷, 3號, 1999.
- 宮崎順子, 『傳郭璞『葬經』의 成立と 變容』, 日本中國學會會報 제58집, 2006.
- 宮崎順子, 『風水書に 觀して』, 『術數書の基礎的文獻學的研究』, 2007.
- 이승연, '조선조 예학사에 있어서 사례편람의 위치', 동양예학, 3집, 1999.
- 이승연, '구준의 예학에 관한 고찰—『가례의절』을 중심으로', 동양예학11집, 2003.
- 이승연, '18세기 전후 주자학의 지역적 전개에 관한 일 고찰—정만양 정규양 형제의 『의례통고』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제18집, 2008.

Abstract

The Study on the Gyeongrye(New Funeral Ceremony)

—Focusing on the “Gaejangbiyo” Written by the Jeong Manyang and Jeong Gyuyang—

Lee, Seung-Yeon

Jeong manyang, Jeong gyuyang brothers lived in 18C when the Namin-wing of Yeongnam went down in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y had Garye(the courtesies of home) commentary book called “Garyecharok” “Garyechau” that were well organized books even though they were already destroyed. They wanted to stipulate Hyanggarye (the courtesies of the town) based on studying historical evidences of Hyangeumjurye and Hyangsarye, and they had dreams to enlighten the people lived in their hometown. But it wasn't defined how the brothers influenced on the courtesies in Yeongnam province and Joseon dynasty and what their positions were in that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tries not only to define the Gyeongrye's distinctive quality and significance but also to relight their positions and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ourtesies.

Key Word

Jeong manyang, Jeong gyuyang, Yehak, Gaejangbiyo, Gaejangrye

▪ 논문투고일 : 2008.12.22. 심사시작일 : 2009.1.15. 심사완료일 : 2009.1.30.